

제272회 강서구의회 제1차정례회
행정·재무위원회 제4차 회의

서울특별시 강서구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기본 조례안
검 토 보 고 서



2020. 6. 12.

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행정·재무위원회

서울특별시 강서구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기본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2020년 6월 12일
전문위원 배 금 택

1. 회부경위

- 가. 의안번호: 2020 - 60
- 나. 제 출 자: 윤유선 의원 외 7명
- 다. 제출일자: 2020년 6월 3일
- 라. 회부일자: 2020년 6월 10일

2. 제안이유

서울특별시 강서구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실현 및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자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구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이라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.(안 제1조)
- 나. 인권, 구민 등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함.(안 제2조)
- 다.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대하여 규정함.(안 제3조)
- 라. 구청장의 책무 및 구민의 참여를 규정함.(안 제4조~제5조)
- 마. 기본계획 수립 관련 사항을 규정함.(안 제6조)

바. 인권교육, 인권보장 및 증진활동 지원 등에 대하여 규정함.

(안 제7조~제8조)

사. 위원회 설치 및 구성, 운영 관련 사항을 규정함.(안 제9조~제18조)

아. 시행규칙 마련 근거를 규정함.(안 제19조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국가인권위원회법

나. 협조부서 : 감사담당관

다. 입법예고(2020. 6. 5. ~ 6. 9.) 결과 : 의견 없음

5. 검토의견

가. 제정 취지

서울특별시 강서구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 하고자 함

나. 주요 내용

- 구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이라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(안 제1조)
- 인권, 구민 등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(안 제2조)
-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대하여 규정(안 제3조)
- 구청장의 책무 및 구민의 참여를 규정(안 제4조 및 제5조)
- 기본계획 수립 관련 사항을 규정(안 제6조)

- 인권교육, 인권보장 및 증진활동 지원 등에 대하여 규정(안 제7조 및 제8조)
- 위원회 설치 및 구성, 운영 관련 사항 등을 규정(안 제9조~제18조)
-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(안 제19조)

다. 종합 의견

- 「서울특별시 강서구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기본 조례안」은 구민의 인권보호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조례 제정에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,
- 안 제12조 2호와 3호의 내용이 중복되므로 제3호를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지고,
- 구민에 대한 인권침해 발생시 구제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.